

2022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전화 1588-0420

당신이라서 OK!
우리라서 OK!

몸이 불편하다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용차별이 없는 사회는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Bus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디자인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제31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디자인 우수상(김효은)

* 19년 7월 1일 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정도과 장애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연금·수당																																					
1. 장애인 연금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소득인정액 요건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매월 20일 지급 (매월,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계</th><th>기초</th><th>부가</th></tr><tr><td>생계·의료</td><td>18~64세</td><td>387,500</td><td>307,500</td><td>80,000</td></tr><tr><td>급여 수급자</td><td>65세이상</td><td>387,500</td><td></td><td>387,500</td></tr><tr><td>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td><td>18~64세</td><td>377,500</td><td>307,500</td><td>70,000</td></tr><tr><td></td><td>65세이상</td><td>70,000</td><td></td><td>70,000</td></tr><tr><td>차상위 초과</td><td>18~64세</td><td>327,500</td><td>307,500</td><td>20,000</td></tr><tr><td></td><td>65세이상</td><td>40,000</td><td></td><td>40,000</td></tr></table>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구분		계	기초	부가	생계·의료	18~64세	387,500	307,500	80,000	급여 수급자	65세이상	387,500		387,5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18~64세	377,500	307,500	70,000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7,500	307,500	20,000		65세이상	40,000		40,000
	구분		계	기초	부가																																
생계·의료	18~64세	387,500	307,500	80,000																																	
급여 수급자	65세이상	387,500		387,50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18~64세	377,500	307,500	70,000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7,500	307,500	20,000																																	
	65세이상	40,000		40,000																																	
2.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 매월 20일 지급																																			
3. 장애인 재활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재활수당 : 1인당 월 3만원 ■ 매월 20일 지급																																			
4.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존3~6급)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3만원 ■ 매월 20일 지급																																			
5. 장애아동 양육수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 월 200,000원 - 36~86개월 미만(취학 전) : 월 100,000원 ■ 매월 25일 지급																																			
6.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중증장애아동 : 월 627,000원 - 경증장애아동 : 월 551,000원 ■ 매월 20일 지급																																			
7.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 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가족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수 및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상담전화 ☎ 1544-0049	■ 교통사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20,000원(무상) ■ 65세 이상 노부모 피부양보조금지원 - 월 220,000원(무상) ■ 생계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유자녀 지원 - 장학금 : 초등학교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 분기별 지급 - 생활자금대출 : 무이자 월25만원, 자녀가 만30세 되는 달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 :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 (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7만원 한도에서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적립 지원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보육·교육		
8.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원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단가 - 종일반 : 월 532,000원 - 방과후 : 월 266,000원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9.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형제자매인 영유아 ※온라인 신청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직장, 협동어린이집 제외)
10.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상담·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자조모임 ■ 수행기관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400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 070-4355-2310
11.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경증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접수 및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12. 장애인 정보화 교육	■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에서 수행기관 확인 ■ 방문교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 ☎ 1588-2670	■ 집합교육 : PC운용, Q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 컴퓨터기초, 인터넷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1:1 무료 교육 (총 20회, 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
13.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14.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으로 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시간 : 월 44시간의 바우처 제공 ■ 이용시간 : 월~금(13시~21시) 최대 3시간, 토요일·방학(9시~18시) ■ 서비스내용 : 취미, 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본인부담금 없음
의료·재활지원		
1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의료 · 재활지원			
16. 건강보험지역 가입자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 가입자 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00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장기 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1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 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이 아닌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 : 40,000원 - 그 외의 장애 : 15,000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18.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단,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이 아닌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19.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 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 현황 안내 : 부산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사회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지원사업-장애아가족지원 에서 확인 가능
20. 언어 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6~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 ·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제공기관 현황 안내 : 부산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사회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지원사업-장애아가족지원에서 확인 가능
21. 우리아이 발달 지원단	■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이 속해 있는 통합기관과 교직원 등 ※접수 및 문의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방문검사(발달진단평가) ☎051)790-6147		■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선별 ·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조기선별 및 지원사업 - 발달지원 네트워크사업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의료 · 재활지원		
22.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 비급여 부분 및 본인부담금 포함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23.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24.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 등록 장애인 - 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 필수	■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 수행기관 - 부산성모병원(완료) ☎ 051)933-7651 - 부산의료원(준비중) ☎ 051)607-2061 - 연제일신병원(준비중) ☎ 051)978-2201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준비중) ☎ 055)360-1280
25.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	■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지역주민 ※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	■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 부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2-2575 -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973-3418 -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518-8700 -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27-5386 -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26-4660 -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911-4600 -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507-7306 -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38-2662 -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334-3200 -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314-4101 -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65-0512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6-1981 -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14-5681 -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861-1914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404-3379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57-7057 -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41-3567
26.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운영	■ 일반의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중증 장애인 -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신마취 등 시행 ■ 치과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1~6급) -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1~5급) - 정신장애 중증(1~3급) - 지체장애 중증(1~3급) - 지적장애 중증(1~3급) - 자폐성장애 중증(1~3급)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은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함	■ 진료비 지원 해당없음 ■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 051)607-2241 ■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 051)240-6800 ■ 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 055)360-5400 ※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지참하여 방문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의료 · 재활지원																																																															
27. 취약 계층 장애인 보조 기기 교부	■ 교부대상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품목 및 교부대상 －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 뇌병변장애인 － 욕창예방 방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도차, 바닥 특수 앞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 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지원금액 : 기기 당 3만원~150만원 지원																																																													
28.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중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신청인 ■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일부 품목 처방 생략) ② 보조기기 사전승인 신청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틸딩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제출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③ 보조기기 구입 － 일부 품목 공단에 등록된 품목 또는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 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일부 품목 검수 생략) 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첨부서류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보조기기 유형별 상이) － 세금계산서 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⑦ 사후 점검 ■ 의료급여 지원절차 － 건강보험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보조기기 구입 전 보장기관에 보조기기 지원신청을 하여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후 지원 결정이 되어야만 함 ■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2종 또는 2종→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조기기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 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는 최저금액의 전액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조기기 및 기준액> *일부품목 <table> <tr> <th>분류</th><th>기준액</th><th>내구연한</th></tr> <tr> <td>■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td><td>20,000원</td><td>2년</td></tr> <tr> <td>■ 목발</td><td>15,000원</td><td>2년</td></tr> <tr> <td>■ 의지·보조기</td><td>유형별로 상이</td><td>유형별로 상이</td></tr> <tr> <td>■ 시각장애인용</td><td></td><td></td></tr> <tr> <td>－ 저시력 보조 안경</td><td>100,000원</td><td>3년</td></tr> <tr> <td>－ 돋보기</td><td>100,000원</td><td>4년</td></tr> <tr> <td>－ 망원경</td><td>100,000원</td><td>4년</td></tr> <tr> <td>－ 콘택트렌즈</td><td>80,000원</td><td>3년</td></tr> <tr> <td>－ 의안</td><td>620,000원</td><td>5년</td></tr> <tr> <td>－ 현지팡이</td><td>25,000원</td><td>0.5년</td></tr> <tr> <td>■ 보청기</td><td>1,310,000원</td><td>5년</td></tr> <tr> <td>■ 체외용 인공후두</td><td>500,000원</td><td>5년</td></tr> <tr> <td>■ 맞춤형 교정용 신발</td><td>250,000원</td><td>19세 이상 2년 18세 이하 1년</td></tr> <tr> <td>■ 수동휠체어</td><td></td><td></td></tr> <tr> <td>－ 일반형</td><td>480,000원</td><td rowspan="3">5년</td></tr> <tr> <td>－ 활동형</td><td>1,000,000원</td></tr> <tr> <td>－ 틸딩형, 리클라이닝형</td><td>800,000원</td></tr> <tr> <td>■ 전동휠체어</td><td>2,090,000원</td><td>6년</td></tr> <tr> <td>■ 전동스쿠터</td><td>1,670,000원</td><td>6년</td></tr> <tr> <td>■ 소모품 전지</td><td>160,000원</td><td>1.5년</td></tr> </table>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원	3년	－ 돋보기	100,000원	4년	－ 망원경	100,000원	4년	－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의안	620,000원	5년	－ 현지팡이	25,000원	0.5년	■ 보청기	1,310,000원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년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원	19세 이상 2년 18세 이하 1년	■ 수동휠체어			－ 일반형	480,000원	5년	－ 활동형	1,000,000원	－ 틸딩형, 리클라이닝형	800,000원	■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 소모품 전지	160,000원	1.5년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원	3년																																																													
－ 돋보기	100,000원	4년																																																													
－ 망원경	100,000원	4년																																																													
－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의안	620,000원	5년																																																													
－ 현지팡이	25,000원	0.5년																																																													
■ 보청기	1,310,000원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년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원	19세 이상 2년 18세 이하 1년																																																													
■ 수동휠체어																																																															
－ 일반형	480,000원	5년																																																													
－ 활동형	1,000,000원																																																														
－ 틸딩형, 리클라이닝형	800,000원																																																														
■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 소모품 전지	160,000원	1.5년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의료 · 재활지원		
29.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점검 ■ 보조기기 대여사업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공 ■ 지원기준(1인당 최대지원금 4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무료 (최대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독거 장애인 : 4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10% - 일반 장애인 : 4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20% ■ 권역별 운영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 051)790-6190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구, 강서구, 사상구) ☎ 051)363-8257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 051)582-3363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 051)294-1282
30. 산소 치료기기 (가정용 · 휴대용) 대여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 및 문의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 기준 금액 - 가정용 : 월 120,000원 - 휴대용 : 월 200,000원 (15일 이내 대여 시 월 100,000원) ■ 지급 금액 - 건강보험 : 기준/실대여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는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실대여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31.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자 ※접수 및 문의 :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산정특례 대상자는 특례기간동안 해당 질환으로 입원 · 외래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0~10% 부담 ■ 비급여 제외 ■ 적용기간 : 질환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32.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 지원범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 간병비 월 30만원 지급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nih.go.kr
33.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 전 검사소요 비용은 자부담(재가장애인) ※치료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 · 군 · 구 에서 정함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세제혜택		
34.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전액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신차 구매시 판매대리점 또는 영업소로 신청 가능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 한도)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연도분 부과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3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기존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접수 및 문의 :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세(기존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의 세대분리 시 취득세 등 추징 -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추징 제외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36.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접수 및 문의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가능)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 해당) ■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면제신청
37. 소득세 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38. 장애인 의료비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39.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40. 장애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보험료차별금지조항 명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15% 공제율 적용
41.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 장애인 ※ 접수 및 문의 : 세무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4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접수 및 문의 : 세무서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만료된 경우, 단, 해지·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세제혜택			
43.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 장애인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44. 장애인 보조 기기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 장애인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 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육상예방법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 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5. 산업 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등록 장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특허·실용시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특허료·등록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료 70% 감면
서비스			
46. 장애인 활동 지원	■ 만6세 ~ 만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지원(신변처리·가사·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지원(인정)시간 - 활동지원급여 : 지원시간은 15구간으로 구분, 구간별 월 47~480시간 제공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월80시간, 자립준비 월2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월 20시간 ■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금 - 시간당 14,800원(야간,공휴일 22,200원)/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별 상이) ※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따라 부산시비 추가 지원
47.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돌봄 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정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시간당 4,510원 ※ 840시간 초과 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시간당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휴식 지원 프로그램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단,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비용 : 무료 ■ 수행기관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48.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 만64세까지의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재학생, 취업자, 시설 이용자 등 제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낮시간동안 교육, 취미, 여가 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 지원 ■ 지원(인정)시간 <table><tr><th>구분</th><th>단축형</th><th>기본형</th><th>확장형</th></tr><tr><td>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td><td>85시간 (3.8시간)</td><td>125시간 (5.6시간)</td><td>165시간 (7.5시간)</td></tr></table>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이용시, 활동지원급여 일부 차감 ■ 본인부담금 없음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	85시간 (3.8시간)	125시간 (5.6시간)	165시간 (7.5시간)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	85시간 (3.8시간)	125시간 (5.6시간)	165시간 (7.5시간)							
49.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포함 ※접수 및 문의 : 시·군·구청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								
50.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포함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가능)								
51. 발달 장애인공공 후견인활동 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000원) - 월 지급 상한(월 400,000원) 1인 : 15만원, 2인 : 30만원, 3인 이상 : 40만원 ※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 051)892-2003 - 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051)506-5024								
52.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개별/전체)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53. 발달 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	■ 가족휴식지원 - 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선진기관 방문, 문화체험 등 ■ 지원금액(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수행기관 -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 051)521-5200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 051)892-2003								
54.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입소절차 : 시설입소 가능 여부 확인-서비스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의뢰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조사결과 전송-서비스 결정 안내								
55. 실비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000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5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한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57.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대상자 선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8.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정 주거편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장애인 가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초 신청접수)	■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편의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등
59.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 지원
60.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61. 무료 법률 구조 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접수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 ☎ 132 - 인터넷상담 www.klac.or.kr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 사건 소송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수수료 본인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62. 법률 상담터	■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 ※배치기관명 - 부산 남구청 ☎ 051)607-4316 - 부산 사상구청 ☎ 051)310-4317 - 부산 수영구청 ☎ 051)610-4027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비스														
63. 장애인 운전 교육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며,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을 희망하거나 소지한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1)469-3250	■ 학과시험 강의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원스톱서비스로 무료 지원												
	■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있는 등록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 051)610-8088	■ 1·2종 보통, 2종 원동기, 소형(오토바이), 1종 특수(소형견인(캠핑카), 대형견인, 구난차(렉카)), 1종 대형(버스) 운전면허 취득교육(학과교육, 장애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무료로 지원												
64. 장애인 과태료감경	■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	■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시행 ■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												
일자리·용자지원														
65. 장애인 의무 고용	■ 등록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 의무 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3.1%이상 의무고용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66.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공공 : 3.6%, 민간 :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하여 지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경증장애인</th><th colspan="2">중증장애인</th></tr><tr><th>남성</th><th>여성</th><th>남성</th><th>여성</th></tr><tr><td>2020년 발생분 부터</td><td>30만원</td><td>45만원</td><td>60만원</td><td>80만원</td></tr></table>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발생분 부터	30만원	45만원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 발생분 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67.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 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이상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 고용/편의시설을 설치/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금 한도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금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개선비,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등 ※고용의무이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 함												
68.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 용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 자동차 구입비용 ■ 시설비용 지원 :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대출금리 : 연 1%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일자리 · 용자지원			
69. 장애인 시설 장비 무상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	■ 무상지원 대상시설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또는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최소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2천만원 한도 (20명 이상인 경우 4천만원 한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초과 금액의 2/3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	3천만원 한도
■ 무상지원조건 및 한도액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한 사업장당 최고 3억원까지 무상지원			
70. 보조 공학 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법 시행일 2022.1.21.이후)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42개 품목 359여개 제품)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 한도 ■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연중수시 접수함	
7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근로자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 자료를 배포 · 게시하여 교육 실시 가능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2.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매년 11~12월, 다음 해 참여자 모집)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일자리유형 및 업무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담 지원 등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급식도우미,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등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수행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일자리·융자지원		
73.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1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 : 중위소득 60%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구직 장애인(단, 만69세를 초과하는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재참여 가능 ※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 1단계(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2단계(직업능력 향상)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각 단계별 참여 시, 수당 지급
74. 장애인 예비창업자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접수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지역센터 ☎ 051)329-8230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맞춤형 창업교육 - 사업화 자금지원 - 경영환경개선 자금지원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75.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 센터운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접수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지역센터 ☎ 051)329-8230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지역센터 입주지원 - 수출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MAS 및 입찰컨설팅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 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
76. 부산광역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고용 희망 기업체 ■ 장애인일자리기관 ※ 센터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051)465-1942	■ 구인정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규직종 개발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일자리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운영 ※ 인터넷상담 : https://busanjob4u.net
7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 장애인 ※ 시·군·구청 또는 각 기관별 문의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2021.12.31. 기준 부산시 내 총 42개소 운영
78. 장애인 생산품판매 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1)852-0258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 지역 : 시·도당 1개소 (17개 지역)
79.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기관 : 국민은행 ■ 대여이자 : 최고 연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공공요금 감면		
80.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 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81.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 장애인 - KTX, SRT, I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82.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한 등록 장애인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 1시간 내 주차요금 전액 면제 - 1시간 초과, 1일 주차 및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 할인
83. 유선통신 요금감면	■ 등록 장애인(1회선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	■ 시내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통화료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외 전화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84. 이동통신 요금감면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통신회사	■ 1회선 지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 실시
85.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의 수상기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86. 시·청각 장애인TV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시·청각장애인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보급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 지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 2022년 신청기간은 5월 2일(월) ~ 6월 7일(화)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공공요금 감면		
87. 장애인 방송 시청자 지원	■ 시·청각장애인 ■ 발달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88. 항공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통사항 : 국내선 기준,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 (중증 및 기준1~4급) 50% 할인, (경증 및 기준5~6급) 30% 할인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중증) 50% 할인, (경증) 30% 할인 ☎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중증 소아) 30%할인/50% 할인, (경증/경증 소아·중증 소아의 동반보호자) 10% 할인/30% 할인 ☎1666-3060 - 진에어 (중증 및 기준1~4급) 40% 할인, (경증 및 기준5~6급) 할인없음 ☎1600-6200 - 제주항공 (중증 및 기준1~4급) 40% 할인 ☎1599-1500 - 티웨이항공 (중증) 50% 할인, (경증) 할인없음 ☎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89.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중증 장애인 : 50% 할인 (기준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경증장애인 : 20% 할인(일부 선사만 해당)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여객선 회사에 문의
9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21.6.23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6인승 차량도 해당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장애인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처 - 엠피온 ☎ 1544-8202 - 휴먼케어 ☎ 1688-3017 - 온라인 구매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공공요금 감면			
9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신청 개시 (14.12월부터)	
91. 장애인 자동차 시내요금 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장애인차량표지 부착 확인 및 관련 증명서 제시	■ 전액면제	■ 50% 감면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92.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정기검사(17,000~29,000원) － 종합검사(48,000~65,000원) ■ 검사수수료할인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일반검사소 아님) － 사하검사소 ☎ 051)204-9536 － 주례검사소 ☎ 051)324-5331 － 해운대검사소 ☎ 051)781-7570 ※ 2020년부터 자동차검사 예약제 시행 ☎ 02)740-0499 / www.cyberts.kr	
93. 전기 요금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 전력 관할지사·지점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제출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첨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 123	
94.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도시가스 사업소(☎1544-0009)	■ 취사난방용 요금감면 － 동절기(12~3월) : 24,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6,600원 ■ 취사용 요금감면 : 1,680원 ■ 제출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95.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소(☎051-120)	■ 상수도 사용량 10t(7,200원), 하수도(4,500원), 물이용부담금(1,500원) 감면 (총13,200원) ■ 제출서류 : 사용요금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 불가	

◆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

- 중증장애인이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 TV수신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이용방법
 - ①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정부24 앱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맞춤형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플러스)'를 선택하거나 통합검색창에서 '전입신고' 검색
 - ④ 전입신고 1~3단계 완료 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
 - ⑤ [민원 신청하기] 선택하면 신청 완료!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96.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해당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00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051)338-0017 부산뇌병변복지관 ☎051)333-3888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051)627-8521 금정구장애인복지관 ☎051)523-0100 기장장애인복지관 ☎051)727-3088 남구장애인복지관 ☎051)626-6990 동구장애인복지관 ☎051)469-9756 동래구장애인복지관 ☎051)522-1650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051)808-8190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1)362-7755 사상구장애인복지관 ☎051)302-5523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1)262-2461 서구장애인복지관 ☎051)242-3930 수영구장애인복지관 ☎051)717-0290 영도구장애인복지관 ☎051)403-6060 해운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1)521-5200
97.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운영	■ 등록 장애인 ※ 해당 주간보호센터로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며,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www.bsrehab.or.kr
98. 수어 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공서 및 개인	■ 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수어교육 및 통역인 양성 ※ 부산수어통역센터본부 ☎ 051)635-3746 ※ 동부산수어통역센터 ☎ 051)513-6350 ※ 북부산수어통역센터 ☎ 051)337-3940 ※ 서구수어통역센터 ☎ 051)244-9770 ※ 수영구수어통역센터 ☎ 051)759-9344
99. 부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 등록 시각장애인	■ 외출, 출·퇴근 보조, 장보기, 민원업무 보조, 병원안내, 배송서비스 및 나들이지원 등 ■ 이용료 : 10km 2,000원, 700m당 100원 (70m 초과 시 10원) ■ 결제방식 : 카드결제 ■ 차량예약 및 이용문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51)464-3292
1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1~3급)의 보호자 1명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수영, 헬스, 농구 등 기관별 프로그램 상이) ■ 이용료 : 실비(장애인 50% 감면) ■ 제출서류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스포츠센터 - 부산곰두리 스포츠센터 ☎ 051)503-6363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 051)709-0700 -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 051)203-7780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101. 여성장애인 도우미 파견	육아 도우미	■ 만9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산전· 산후관리, 육아와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여성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불편해소 지원 ■ 이용료 : 무료 ■ 수행기관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19			
	가사 도우미	■ 저소득 및 독거 여성장애인				
102.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 지원 차량 운영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 뇌병변· 신장· 청각(평형)장애인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무료로 운행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 수행기관 안내창구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863-0382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 051)807-0091			
103.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자비콜 운영	■ 보행상 중증 장애인(기존1~3급),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1~3급) 제출자 ■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조건) － 이용요금 : 중형택시요금의 35% 수준 (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 102초당 100원)		■ 두리발(휠체어 중증 장애인-기존1~3급)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뇌전증 (보호자 동반시) * 지체장애(상지)의 경우 :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및 휠체어탑승 시 이용가능 － 182대 보유 ☎ 051)466-8800			
			■ 자비콜(비휠체어 중증장애인-기존1~3급) － 장애유형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결제가능 (현금결제 허용 안함) － 1,000대 보유 ☎ 051)583-8000			
104. 장애인 저상 버스 운영	■ 휠체어 사용 장애인 －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 － 이용요금 : 시내버스요금과 동일		버스번호	운영대수	버스번호	운영대수
			155	1대	8,20,27	10대
			100,111,123,182	2대	57,127,148	11대
			5-1,9,36,40,71, 100-1,111-1, 128-1,139,184,300	3대	24,31,83,85, 108,113,138, 148-1	12대
			6,11,82,83-1, 105,133,302,506	4대	49,68,167	13대
			33-1,42,55, 115,138-1	5대	41,110,169	14대
			7,10,26,44,59, 131,183,189-1	6대	50,80,107	15대
			15,63,99,124, 181,188,189,508	7대	110-1,129-1	17대
			33,126	8대	54	18대
			30,39,67, 96,101, 168,179	9대	51	19대
					141	20대
					77	21대
					62	25대
					81	26대
※2022년 3월 기준 총 85개 노선 730대 운행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105. 장애인 자동차 무료대여 (초록 여행)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 987-4943 대표전화 1670-4943 (내선2)	■ 장애인과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직접 운전하며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4세대 카니발차량을 운영하는 사업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기아와 함께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두 이용 가능(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 홈페이지 www.greentrip.kr － 홈투홈서비스 : 차량을 무료로 집(원하는 곳)까지 가져다 드리고, 반납할 때 집(원하는 곳)에서 반납할 수 있음(P등급 무료/ V등급 편도 10,000원/ G등급 유료) － 1달에 1회 신청 가능,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대여가능하며, 1년 사용일수에서 차감 － 초록 등급에 따라 매년 6일~10일 사용 가능	구분	등급	연간사용 가능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Platinum	10일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ip	8일
		그 외 모든 등록 장애인	Gold	6일
		■ 4세대 카니발 2대 운영 － 1호차 : 5인승(핸드컨트롤러, 전동식 회전시트, 트랙커 장착)[1종보통 이상 운전가능] － 2호차 : 11인승(핸드컨트롤러, 전동식 회전시트 장착)[1종보통 이상 운전가능] ※초록여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106.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대여 (휠세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 987-7988 대표전화 1670-7988 (내선2)	■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여행이나 출장시 전동화 키트를 무상으로 대여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손잡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서울권역(KTX광명역, 김포공항, 그린라이트-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부산권역(부산역, 김해공항,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제주권역(제주국제공항 1층 휠세어 존 부스), 경주권역(보문단지 내)에서 직접 대여 및 회수 가능 － 홈페이지 http://www.wheelshare.kr － 1달에 1회 신청 가능, 1일 1회 대여 시 최대 10일(해외는 15일) 대여가능하며, 1년 사용일수 20일에서 차감	■ 스마트 드라이브, 토도 드라이브, 보호자 조작형키트 ■ 부산지역 내에서만 원하는 장소(자택, 직장)에 직접 배송 및 회수 가능 ※휠세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107. 이동 목욕 차량 운영	■ 중증 재가장애인 또는 장기 외병중인 노인 － 저소득가족의 중증(기준1~3급) 재가장애인(우선순위) －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장애인(2순위) －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추천을 받은 장애인(3순위) － 장기 외병중인 무의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3순위)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상 제외	■ 보건의료인·운전기사·목욕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목욕서비스 제공 ■ 권역별 서비스제공기관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863-0650 (관할구 :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 051)465-7064 (관할구 :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중구)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051)531-2460 (관할구 : 동래구)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051)403-4200 (관할구 : 영도구)		
108. 장애인 전용전화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 1588-0420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관련 상담 － 장애인복지관련 정보제공, 고충상담, 관련기관 연계 등 ■ 이용시간 : 월~금 (09시~18시)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109. 장애인 결혼상담소 「내 마음의 보석찾기」 운영	■ 결혼적령기의 45세 이하 미혼 남 · 녀 장애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결혼상담소 ☎ 051)868-6004	■ 장애인 결혼상담소 「내 마음의 보석찾기」 - 사랑의 교실(결혼강좌), 사랑의 문화생활, 만남주선(상담지도),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등 운영 ※홈페이지 : www.iwedding.or.kr
110. 산재 장애인 상담 센터 운영	■ 산업재해장애인 및 산재가족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 051)807-0091	■ 상담활동(심리 · 동료 · 가족 · 법률 · 재활 상담) ■ 사회 적응프로그램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 등 ■ 이용시간 : 월~금(09시~18시)
111.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부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051)506-5024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112.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 ※부산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51)892-2014	■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지원 ■ 부모교육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사업 ■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등 장애인가족역량강화 사업
113. 장애인 재활 지원 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 051)465-7064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부산장애인정보화대제전(예산/본선) - 인권 · 교육지원사업 : 인권교실, 정보화교육 - 생활 · 문화지원사업 : PC보급 및 방문A/S, 정보요원단운영, 꿈지원(여름캠프) 등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종사자교육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용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114.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1)714-7360	■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사업내용 - 전문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 권리구제 - 공공후견 - 주간활동서비스 - 부모교육 - 가족휴식지원사업
115. 편의 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운영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 -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요원으로 위촉하여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 신고 등의 활동 수행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11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권을 확보함 ※ 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부산센터 ☎ 051)465-8859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117.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도모 ※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971-5933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82-3334 -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24-0332 -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58-0717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338-2287 -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900-6670 -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25-2678 -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312-5559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294-1282 -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818-3435 -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253-7707 - 수영구행복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59-7781 -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07-9601 -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03-9280 - 중구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65-5510 -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62-9977 -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627-0308 -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04-7707
118. 부산 광역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등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6	■ 지원내용 - 장애인학대 사건 지원 - 피해장애인 피해회복 지원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 장애인학대신고 : ☎ 1644-8295 (평일 09시-18시) ☎ 112 (야간, 평일 18시 이후, 휴일)

주요시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법률		
119.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 과태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누구든지 제 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과태료 : 10만원 부과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 50만원 부과	
120. 장애인 편의 시설 의무 설치	■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부과 대상 및 내용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부과	
121.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2008.4.11 시행) ■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 차별의 정의 - 직접차별 :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122. 권리구제	■ 차별행위 발생 시 법적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 조사 → 시정권고 - 법무부 : 시정명령 → 과태료 및 징역 ■ 부과 대상 및 내용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반복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단체 |

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9층 (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863-0650	866-0651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박성우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8층	465-8857	465-9058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김복명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4, 3층	462-3292	462-3290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김경대	연제구 월드컵대로 21, 5층	635-3746	637-4154
부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희동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506-5024	506-5059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안규봉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10층	808-3566	050-4926-0090
부산광역시 정신보건가족협회	이이현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4층	646-7460	642-2776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김성득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853-8885	853-7885
부산광역시16개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	박일복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7층	552-1597	552-1599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유영호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5층	465-9055	465-9066
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892-2003	892-6683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장향숙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4층	517-9669	583-1996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최필순	동래구 반송로 327	528-8269	528-8270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안성준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7층	807-0091	807-0069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	장희덕	해운대구 반송로 612	528-7611	528-7612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이남구	중구 동광길 182	462-2108	462-2101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김진태	동구 초량상로 90-1	464-0135	462-0266
한국장애인연맹부산DPI	장진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504호	905-2678	782-2608

| 부산광역시 지역 장애인협회 |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	팩스
부산광역시 강서구장애인협회	곽도호	강서구 낙동북로 477, 별관102호 (강서구청)	973-9445	714-1193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협회	이정기	금정구 동현로 140	524-4323	529-3144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애인협회	이순희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413번길 72-1	722-0082	722-2276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협회	정찬용	남구 유엔평화로 45, 3층	622-2656	625-2657
부산광역시 동구장애인협회	김홍섭	동구 중앙대로 333	468-6189	466-7897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협회	장동출	동래구 총렬대로 509	525-0107	525-01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장애인협회	한삼청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15	894-5601	898-0886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협회	이창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79	342-7626	342-6872
부산광역시 사상구장애인협회	하태상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 3층 (사상구장애인근로작업장)	304-8627	302-5181
부산광역시 사하구장애인협회	손문화	사하구 다송로72번길 63, 202호	261-2275	261-2276
부산광역시 서구장애인협회	김양서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20	243-3907	248-6886
부산광역시 수영구장애인협회	어용우	수영구 광남로 218-4	756-1595	757-0486
부산광역시 연제구장애인협회	이영숙	연제구 봉수로 17, 4층 (연산종합사회복지관)	866-0214	866-0216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협회	김정애	영도구 동삼북로2, 주공1단지 상가 내	403-4032	405-4032
부산광역시 중구장애인협회	채명순	중구 동영로93번길 3, 1층	466-4126	468-89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김종암	해운대구 해운대로570번길 8, 9층	731-1116	744-1146

장애인 등록 안내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며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니 장애인 등록에 적극 참여합시다.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 등록시기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통합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장애인 등록절차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Bus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우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9층(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전화 : 051) **863-0650** 장애인전화상담 : **1588-0420**

전송 : 051) **866-0651** 장애인결혼상담 : 051) **868-6004**

홈페이지 : <http://www.pjy.or.kr> E-mail : uhap12@hanmail.net